

(근)질권 설정 계약에 대한 특약 (증권회사 위탁계좌 질권설정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채권자, 채무자 및 설정자는 당사자간 20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합니다.

제1조(담보목적물)

설정자가 제공하는 담보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자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아래 기재 예탁증권과 그 반환청구권

증권회사명	증권계좌번호	증권의 종류	종목명	수량	비고

2. 위에 기재한 증권계좌의 예수금, 배당금 등에 대해 담보한도액 범위까지의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3. 기타 입질주식으로 인하여 또는 입질주식 대신에 향후 명의인이 상기 계좌로 입고 또는 입금받게 될 유가증권, 현금 등과 그 반환청구권

제2조(담보목적물에 대한 처분 등)

채권자는 원계약서 제5조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근)질권자로서 증권회사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출고, 출금받아 매도, 처분, 추심 등을 통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질권설정의 통지)

설정자는 제1조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근)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증권회사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통지할 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통지에 따라 설정자 명의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해석)

이 특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특약의 용어는 원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5조(질권설정의 전자등록 신청 동의)

질권설정자는 채권자(질권자)가 증권회사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채 권 자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채 무 자 _____ (인)

(근)질권설정자 _____ (인)

